예 산 총 칙

2009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ㆍ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310,444,471	9,313,334
일반회계	271,693,582	8,150,807
일반회계	271,693,582	8,150,807
기타특별회계	38,750,889	1,162,527
상수도사업	2,385,671	71,570
하수도사업	1,073,109	32,193
수질개선	4,574,420	137,233
자활 및 생활안정기금	430,952	12,929
의료급여기금	519,308	15,579
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	515,500	15,465
기반시설	397,875	11,936
소득특화사업	6,369,788	191,094
농공단지조성사업	2,674,118	80,224
공영개발사업	9,224,105	276,723
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	10,586,043	317,581

제 2 조 2009년도 세입 ㆍ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 ㆍ 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2009년도 채무부담행위조서 : "해당없음"

제 4 조 2009년도 계속비사업 : "해당없음"

제 5 조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3,893,675천원으로 하며, 예비비의 40%는 재해대책비의 용도로만 사용 할 수 있다.

제 7 조 2009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2,9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 할 수 있다.

1.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
2.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